

16. 종교시설 면제

§ 지특법50조 취득세100%, 최저한세 미적용 **농비**

취득세 100% 면제

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_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(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)

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교회회의록, 정관 | 6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(구청 문화체육과) |
| 2 소속증명서 | 7 매매계약서 |
| 3 대표자증명원 | 8 실거래 거래신고필증 |
| 4 직인 인감증명서 | 9 비과세감면신청서 |
| 5 부동산이용계획서 | 10 취득세신고서 |

취득세 추징사유

1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·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